

효성아이티엑스(주)

기업지배구조 헌장

(HYOSUNG ITX Corporate Governance Charter)



전 문

효성아이티엑스(주)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주주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“기업지배구조 헌장”을 제정하고 실천지표로 삼는다.

I. 주주의 권리와 주주권 보호

1.1 주주의 권리

- ① 주주는 효성아이티엑스(주) 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소유자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 - 이익분배 참여권
 -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
 -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
-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.
 - 정관의 변경
 - 합병,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
 - 해산
 - 자본의 감소
 -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
-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, 주주에게는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. 또한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.
- ④ 회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주주제안권을 가진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하도록 할 수 있으며,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 또한 회사는

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.

- ⑤ 회사는 주주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1.2 주주의 공평한 대우

- 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진다.
-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.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.
- ③ 회사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.

1.3 주주의 책임

- ① 주주는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.
- ② 대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,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.

Ⅱ. 이 사 회

2.1 이사회회의 기능

-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한다.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한다.

- 경영목표 및 핵심 경영전략의 수립

- 경영진의 임면, 감독, 평가 및 보상정책 결정
- 경영성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
- 중요한 투자사업, 대규모 자금차입,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기타 법령 및 정관 등에 규정된 사항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2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

- ① 이사는 최상의 개인적·직업적 윤리와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,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. 또한, 이사는 탐구적인 자세와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, 그리고 실용적인 지혜 및 성숙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.
- ②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,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. 또한 이사는 주요한 직업상 책임의 변화를 포함하여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법적 지위를 규정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야 하며,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. 여기서 중대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자, 회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.

2.3 이사회 구성 및 운영

- ① 회사의 이사는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으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을 제정·운영한다.

2.4 이사의 선임

- ①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특별히 사외이사는 기업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 또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후보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2.5 사외이사의 역할. 권한. 의무

- 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.지원한다.
- ② 사외이사는 취임승낙 시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회사는 선임될 사외이사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공시한다.
- ③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.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일 최소 3일전까지 소집내용을 통보한다.
-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은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며,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.
-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,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한다. 사외이사는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내.외부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도록 노력한다.
- ⑥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재무, 법률 또는 여타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

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- ⑦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·지원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. 또한 사외이사와 경영진은 경영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한다.

2.6 이사의 의무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사는 기업경영의 주체로서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한다.
- ② 이사는 기업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. 이사는 그 권한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안되고,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사한다.
-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.

2.7 이사의 책임

-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,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,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.

2.8 평가 및 보상

-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며,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.
-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 제한적으로 부여하고, 그 산출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. 한편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, 부여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한다.
- ③ 이사회는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, 이를 공시한다.

Ⅲ. 감사기구

3.1 감사

- ① 회사의 감사는 2인 이내로 하며 감사 중 1인을 상근으로 한다
- ② 감사의 주된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.
 -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
 -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
 -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 - 기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감사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며,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한다

3.2 외부감사인

-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한다.

IV. 이해관계자

- ① 회사는 채권자 보호, 소비자 보호,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,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에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정보 접근을 최대한 지원한다.

V. 공 시

-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,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,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.
- ② 정기공시 이외에 법적 의무사항 및 중요 현안과제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.
- ③ 공시책임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, 공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.